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95
----------	-------

발의연월일 : 2024. 5. 28.

발 의 자 : 윤미향 · 최종윤 · 김의겸
한정애 · 강민정 · 민형배
송옥주 · 유기홍 · 양정숙
이수진^배 의원(10인)

찬 성 자 : 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도박 · 광고 · 오락 ·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야생동물의 보관 · 유통시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함께 실시한 ‘고래류 전시 · 사육 수족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에서 고래류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많으며 수족관의 좁은 환경과 강도 높은 조련이 그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와 관련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면서 야생동물을 보관 · 유통하는 경우에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부상 · 사고 등의 위험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도박”을 “동물쇼 또는 공연행위 등의 실연이나 준비 과정에서 고통을 주거나 도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을 “아니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또는 부상·사고 등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생략)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도박·광고·오락·유흥</u>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u>동물쇼 또는 공연행위 등의 실연이나 준비 과정에서 고통을 주거나 도박</u> ----- ----- -----
5. 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고의로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u>아니하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u>	5. ----- ----- ----- <u>아니하는</u> -----
<u><신설></u>	6. <u>야생동물을 보관, 유통하는 경우 등에 질병의 진단·치료·예방 또는 부상·사고 등의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u>

위